

06 부록

I.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II. 경기문화재단 정관

III. 이사 및 감사 현황



I. 경기도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장 총칙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전문개정 2008.1.7 조례 제3713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며,「지방자치법」및「문화예술진흥법」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② 도지사는 주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한다.
- ③ 도지사는 도의 정체성 확립과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경기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

제3조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의원 2명, 도의 문화관광국장,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문화정책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실비반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계획수립)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 (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육성에 주력한다.
-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 3.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 4. 문화예술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 5. 문화거리·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 6. 노인·어린이·청소년·장애인등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 7. 국제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
 -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제13조 (주민의 의견반영)

-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 시 관련전문가나 당사자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② 도지사는 필요 시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도정중점사업의 선정)

-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추진되도록 노력한다.
- ② 도지사는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제15조 (문예진흥구역의 지정) 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켜주는 종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문예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개발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한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
 -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창극단·실내악단·국악단·공연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
 -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도 지정 전문예술 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경기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경기문화재단

제19조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0조 (사업) 재단은 제19조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 3.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의 지원
- 4. 도 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6. 국제문화교류센터의 운영
- 7. 도가 운영하거나 건립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 8.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재원조성)

- ① 재단은 제20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군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한 출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출연금운용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사용료 및 관람료)

- ① 재단은 제20조제7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및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지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박물관 사용료 징수 조례」,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08년 3월 1일자로 각각 이를 폐지한다.

Ⅱ. 경기문화재단 정관

정관
 제정 1997. 3. 6 정관제 1호
 개정 2009. 2. 27 정관제139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은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약칭 “GGCF”)으로 표기 한다.

- 제2조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① 재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의 1번지에 둔다.
 - ② 재단의 분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둔다.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길 36 (경기도미술관)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백남준아트센터)
 5.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72-1 (경기도자박물관)
 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00-3 (경기창작센터)
 7.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27-1 (실학박물관)
 8.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3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제3조 (목적) 재단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현대화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지원과 환경조성
3. 문화예술 정책개발, 교육 및 연수
4.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5. 문화예술 정보화 및 홍보
6. 국제문화예술 교류
7.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
8. 지방향토사 연구
9. 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등
10.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1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사무
12. 기타 재단 이사장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수행에 따르는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 ①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사무처장 1인
 4.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1인
 5. 경기도박물관장 1인
 6. 경기도미술관장 1인
 7.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1인
 8. 경기도자박물관장 1인
 9. 실학박물관장 1인
 10.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1인
 11. 이사 15인 내외
 12. 감사 2인
- ② 대표이사, 사무처장,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경기도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 경기도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이하 “아트센터 관장”이라 한다), 경기도자박물관장(이하 “도자박물관장”이라 한다), 실학박물관장(이하 “실학박물관장”이라 한다),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이하 “남한산성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이사장)

- ① 이사장은 도지사가 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 (이사)

-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도지사
 2. 대표이사
 3.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도의원 2인
 4. 도 문화관광국장
 5.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장
 6.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7. 경기도박물관장
 8. 경기도미술관장
 9.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 ③ 선임직 이사는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감사)

-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도의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도지사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의결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 (임원의 임기)

- ① 대표이사, 사무처장, 연구원장, 박물관장, 미술관장, 아트센터 관장, 도자박물관장, 실학박물관장, 남한산성 사업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승계한다.
- ② 1항의 임원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 ③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4조 (구성)

-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제15조 (회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장은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3장 이사회

② 이사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제19조 (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 과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설치)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재단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1조 (구성 및 운영) 재단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재산)

-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재단의 설립 및 자본의 증식을 위해 도, 시·군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운영재산은 도의 출연금 및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④ 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매년 당기순이익의 10퍼센트 이상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⑤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지1)과 같다.
- ⑥ 재산은 그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7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재원)

- ① 재단의 사업,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과 관리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운영재산과 외부기부금, 위탁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매 회계연도 운영재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익년도까지 발생할 운영재산 수입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을 일반회계 운영재원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한 기본재산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과 도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등의 작성)

- ①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제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결산서등의 제출)

- ① 재단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 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재단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사무처)

- 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처 (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단자문 위원회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6장 사무처

제7장 경기문화재연구원

제32조 (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 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재 발굴 및 그 관련 사업을 위해 경기문화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4조 (조직 등)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문화예술시설)

- ① 도민의 문화예술향수 증진을 위해 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을 재단에서 운영 관리한다.
- ② 문화예술시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문화예술시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등)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잔여인력에 대하여 경력과 능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용 등 취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시행규정)

-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시행 한다.
- ② 다만, 제23조제3항과 제32조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2008. 7.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중 "제2조" "제1항" 및 "제5조" "3호"와 "4호", "제7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기관 명칭을 "기전문화재연구원"은 "경기문화재연구원"으로, "조선관요박물관"은 "경기도자박물관"으로 개정한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재운영규정"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운영규정"으로, "경기문화재단 조선관요박물관운영규정"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운영규정"으로 개정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구 분	금 액	비 고
현 금	₩119,907,634,720원	사육포함

이사 및 감사 현황

2008. 12. 31 현재

직책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이사장	김 문 수	경기도청도지사	서울대 경영학과,국회의원
대표이사	권 영 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중앙일보사장,중앙일보발행인
당연직이사	황 성 태	경기도청 문화관광국장	경기도 투자진흥관,양주시부시장
당연직이사	유 영 근	경기도의회 도의원	김포문화원·향토조사 사료위원회 사무국장
당연직이사	김 현 복	경기도의회 도의원	한국학진흥연구원·한국독서문화원 이사
당연직이사	오 용 원	경기도문화원 도지회장	평택문화원 원장
당연직이사	남궁 원	예총경기도연합회 회장	성남예총회장,경원대학교수
당연직이사	김 재 열	경기도박물관 관장	호암미술관 부관장, 문화재청문화재위원
당연직이사	김 흥 희	경기현대미술관 관장	홍익대 겸임교수
당연직이사	이 영 철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계원조형예술대 교수
당연직감사	이 병 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장	경기도 경제투자관실 기업지원과장
선임직이사	김 원	(주)건축환경연구소 광장대표이사	부산영상센터 건립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직이사	김 훈	소설가	시사저널 편집국장
선임직이사	배 기 동	한양대학교박물관관장 한국박물관협회회장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대학교원고학박사
선임직이사	이 강 속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총장
선임직이사	이 길 여	경원대학교 총장	경인일보회장, 가천길재단회장
선임직이사	이 기 웅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선임직이사	최 만 린	예술마을 헤이리 이사장	국립현대미술관장
선임직감사	김 면 기	공인회계사	화성상공회의소 자문위원

2008 경기문화재단 연감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인. 권영빈

발행처. 경기문화재단(www.ggcf.or.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 화. 031-231-7200, 7263

팩 스. 031-231-7269

편 집. 경기문화재단

이곳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는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